기한, 기간

1. 始期/변제기

-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
-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게 되는 시점

2. 終期

- 법률행위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
- 계약종료시점

3. 불확정 기한

- 도래할 것은 확실하나, 도래 시점이 불확실 한 경우
- 도래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면 조건으로 해석
- 제반사정, 당사자의 의도, 거래의 목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한/조건 평가

4. 기한의 이익 (제153조)

- 주로 채무의 변제기에 적용(제468조)
- 기한이익의 상실 (제388조)

5. 기간의 계산

- 보충적 규정 (155조)
- 시, 분, 초로 정한 기간 — 즉시로 기산
- 일, 주, 월, 년으로 정한 기간
    - 초일 불산입 (0시에 시작하는 초일은 산입)
    - 연령계산에는 출생일 산입
    - 주, 월, 년으로 정한 기간
    -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
- 일로 정한 기간의 경우 — 연휴, 주5일 근무에 대비한 입법론